

자유공원 행정재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공고문

- ※ 본 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 및 관련 행정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승계됩니다.
- ※ 허가대상자 선정 이후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서 교부, 사용료·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 및 수납, 기타 후속 행정사항은 권한 승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자유공원 공유재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 허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4.(수) 16:00
입찰서 제출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현장설명일	현장설명 생략
허가대상자 선정	2026. 6. 25.(목) 10:00 예정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에게 유선 통보할 예정.
개찰장소	인천시 중구 입찰 담당 PC
사용·수익허가 신청기한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후속절차: - 2026. 7. 1. 이후 허가기관이 별도 안내하는 기한 내
사용허가기간	사용개시일부터 3년간

-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주변 지역 여건 등은 물론 시설 현황 및 각종 공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수익허가 내역 (※ 허가 기관은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함)

소재지	사용목적	허가기간(예정)	예정가격	시설현황			
				위치	내역	면적(㎡)	비고
자유공원 (송학동1가 1-1)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 (2026. 7월 ~ 2029. 6월 예정)	금197,175원 (부가세 및 공공요금별도)	1층	자동판매기	2.25㎡	커피 1대, 멀티 1대

-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 (낙찰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 낙찰금액은 최초연도 사용료이며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산정·부과합니다.
- ※ 자동판매기 설치비, 금·배수 및 전기 공사비, 공공요금은 별도입니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결정입니다.
- 라.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 입찰은 공동참가가 불가합니다.
- 바.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 나.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양도 불가)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고 한다)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허가대상자는 사용허가신청 후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 등을 모두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 등을 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명의 차용시 취소결정)

5. 입찰보증금 관련

가. 본 입찰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회계·수납 절차 조정 및 소액 사용·수익허가 입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보완, 사용료 납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대상자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징수 등 필요한 조치는 2026. 7. 1. 이후 허가기관의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낙찰자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연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공제금 등은 허가기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 담당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 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의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부가가치세 별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허가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청인 자격확인서류 1식

- 개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설치 위치, 기기 규격, 판매품목 및 가격, 위생관리, 고장·민원 대응, 공공요금 부담계획 포함

운영·관리 이행확약서 1부

- 직접 운영, 권리양도·전대 금지, 원상복구, 관계 법령 준수, 민원·위생관리 책임 포함

나. 사용개시 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증 등 관계 법령상 인허가·신고 증빙서류 1부

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해당 보험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서류 1부

최종 설치 위치도 및 설치 완료 사진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되는 서류는 제출 면제

10.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6. 7. 1. 이후 허가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초연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공제금 등 납부가 필요한 금액은 2026. 7. 1. 이후 허가기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라. 허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보완, 사용료 납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대상자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허가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마. 허가대상자는 사용허가 조건 이행,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위하여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행확약서 또는 허가기관을 피보험자로 하

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사용허가 대상 재산이 손해배상 공제 등에 가입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기관이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결과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음을 감안하여 개별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과 낙찰자의 자판기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시설을 현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에 따르는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에 따른 피해는 허가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업의 손익 발생은 온전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응찰 전 제반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집기류, 매대, 의자 등 필요 기자재는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 등으로 낙찰자가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사용허가 종료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낙찰자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 사용허가에 따른 전기 사용료, 수도료, 폐기물 처리(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등 영업에 따라 월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3.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온비드 콜센터)

나. 사용허가 신청 및 입찰사항

- 2026. 6. 30. 까지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97)
- 2026. 7. 1. 이후 : 권한승계기관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붙임 1.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
2.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2026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붙임 1】

행정재산(자판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자유공원의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개시일 및 만료일은 사용허가서에서 정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

① 사용료 금액은 일시불로 지정된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사용허가기간 내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산정·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1년) 전액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의 제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대인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건당 3억원이상, 대물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및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 및 부과금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과금(전기요금)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매월 고지서에 명기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지체 없이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판매기 설치자의 행위제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자동판매기 판매물품의 판매금액의 일방적인 변경 행위
6. 본 허가로 인한 연고권 주장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허가기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사용허가 조건 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수허가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 운영이 적발될 때
5. 운영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6. 본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용허가조건과 공고문의 조건을 위반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8. 관리운영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거나 물의가 야기되어 허가기관이 3회 경고 조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허가기관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정당업자제재는 취하지 아니한다. 단, 2개월 전에 포기의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기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기관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민원처리)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1.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동판매기 이용자 및 허가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본 판매기 설치자가 이를 배상 또는 처리 해결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의 관리는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책임 하에 두며, 도난·손괴 등이 발생할 시 설치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자동판매기 이용 중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7조(자동판매기의 이동) 허가기관의 재산관리상·공익상 필요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의 장소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8조(준수사항)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유공원의 환경에 저해가 되는 가설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판매기를 수시 점검하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 일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공고문 및 사용허가서에 따른다.

【붙임 2】

행정재산(자판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허가기관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한다.

1. 자판기 운영의 제반사항은 허가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민원 제기 시 적극 수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자판기 판매대수 및 판매대상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사전에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것만 인정하며, 임의로 판매대수 및 품목을 추가하지 못한다.
(단,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4.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를 통한 물품 판매만 가능하며 자판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의 판매는 절대 금한다. 또한 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단가는 자판기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5.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증명서 사본 제출) 이를 해태하여 공원 운영상 손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6.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자판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7. 무인자판기 시스템으로 하되 자판기 주변의 위생 청결, 고장 및 품질 등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해결**(1시간 이내) 하여야 한다.
8.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자판기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10.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과손의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허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시에는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기관 및 다음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권리금) 돈을 청구하지 못한다.
13.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종료된 경우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설치 시설물 및 물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가 곤란하거나 허가기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무상귀속 또는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지정기한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14.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자판기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판기에 대한 권리금 등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5.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 제한/휴장/행사·보수로 인한 운영중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한될 수 있다.
16. 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자판기 설치 및 사용)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을 위반할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일 때 허가를 취소한다.
17.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허가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본 편의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